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 영 수 의원)

의안 번호	508
----------	-----

발의연월일: 2023. 11. 9.
발 의 자: 정영수·김진출·이주한
이금태·이동운 의원

1. 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3.8.16. 개정, '24.2.17. 시행)에 지방
의회 의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민
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법 시행에 맞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안 제11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u></p> <p><u>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u> <u>3개월 이내</u></p> <p><u>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u> <u>3개월 이내</u></p>

관계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